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65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
2.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등	10
3.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15
4.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 규정	18
5. 감사의 기본원칙 규정	21
6.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절차 규정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24
7.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의 열람·복사권 보장	28
8. 변호사의 참여권 등 보장	30
9.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에서 배제	34
10. 벌칙	3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잇따른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회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대표성을 반영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에 대하여 감사위원회회의가 사후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제24조제5항 신설 등).
- 다. 감사위원회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비공개 의결사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라. 감사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함(안 제15조의3 신설).
- 마. 감사원의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해 원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원장 책임 아래 수행한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 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사. 제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1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 개정안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우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감사위원(제청할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제98조1)).

□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제2절 감사위원’을 두어 감사위원의 임기, 정년, 임용자격, 신분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1)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하고 있으나(제5조부터 제10조까지²⁾)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대통령에게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2) 제2절 감사위원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³⁾이므로 제청 단계부터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법원 및 검찰의 경우에는 각각 대법관 및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비상설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41조의2⁴⁾ 및 「검찰청법」 제34조의2⁵⁾).

3)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4)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7명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비당연직 위원
4명의 자격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촉권자인 감사원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 1인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법관 3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

-
-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 2. 법무부 검찰국장
 - 3. 법원행정처 차장
 - 4. 대한변호사협회장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6)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 1명)이 포함되어 있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전·현직 검사가 2명(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7))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8)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역할 및 기능을 잘 이해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제청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이러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은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의 숫자가 적고, 각계 전문분야의 참여를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

6)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법관으로 보하는 직위임.

*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7)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따라 검사로 보하는 직위임.

* 제10조(검찰국)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8) <대법관 및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개정안의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안) 비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안)
근거 규정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검찰청법」 제34조의2	-
정수	10명	9명	7명
추천 배수	제청 대상 3배수 이상	3명 이상	제청 대상 3배수 이상
추천 구속력	없음(존중 의무)		
회의	기관장이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 시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구성원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각계 전문가(비변호사) 3명	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가(비변호사) 3명	최선임 감사위원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각계 전문가 4명

안전부의 차관 참여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⁹⁾

9) 감사업무 이해도가 높은 감사 관련 학회 또는 단체,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의 숫자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후보추천위원회 참여대상 분야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2.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등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고발 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제24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 ----- -----.
1. 감사원의 <u>감사정책</u> 및 <u>주요 감사계획</u> 에 관한 사항	1. ----- <u>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u> ---- <u>감사계획의 변경</u> 에-----
2. ~ 15. (생략) <u><신설></u>	2. ~ 15. (현행과 같음) <u>16.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7. 제24조제5항에 따른 상시 공직감찰의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8. 제35조에 따른 고발 등에 관한 사항</u>
<u>16. (생략)</u>	<u>19. (현행 제16호와 같음)</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u>이를</u>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직무감찰 중 긴급을 요하여 미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개시 직후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35조(고발) ----- ----- ----<u>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u> ----- --. <u>그 밖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u>

-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 및 징계·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고(제12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5조).

○ 참고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제65조¹⁰⁾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감사 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사요청 등 고발 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감사위원회의의 기능·역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확대 및 수사요청 등을 통한 감사 관련

10) 제65조(고발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전달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의 법적 지위 및 감사업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¹⁾

- **찬성입장**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합의제로 운영되는 감사기구로 감사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감사 결과에 기반하여 감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반대입장**은 감사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감사위원회의가 아닌 감사원장에서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감사실시계획의 결정 등 의사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 착수의 적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감사과정 중 수사참고자료 등 주요 입증서류 송부가 금지될 경우 당사자가 증거 인멸 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11) 안 제35조 후단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오키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감사기구에게 조직상 독립성 및 조직 구성·관리에 관한 완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국제기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감사위원회의에서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개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한다면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므로 수용이 곤란하고, 중간 감사결과 발표는 감사자료 송부가 목적이 아니고, 수사요청·수사 참고자료 송부 시 감사자료 송부 금지는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개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예외를 허용하고, 비공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u>
<신 설>	<u>제15조의3(회의록의 작성 등) ① 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감사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u>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며, 감사위원회회의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감사위원회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13조 및 제16조¹²⁾에서는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 주심위원(원심위원)
5. 소관 국·과 및 관련 기관
6. 부의 안건 제목 및 면수
7. 주심위원의 의견진술
8. 발언 요지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10. 표결 결과
11. 감사기준, 준칙 등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 다만, 비공개의결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비공개의결사항에 국가기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보고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한국은행법」 제24조제3항¹³⁾,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제3항¹⁴⁾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등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비공개 의결사항(감사결과)의 국회 보고는 국가기밀이나 개인 신상·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보고 등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회의록 작성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감사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3)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14)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 규정

- 개정안은 감사원의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절차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며, 감사원장의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4(감찰관 임용) ①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둔다. ② 감찰관은 감사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며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감찰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및 모집·임용절차 등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 설>	제41조의2(내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감사원은 원장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내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감사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검찰청법」 제28조의2¹⁵⁾에서는 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찬성입장은 감사원 사무처와 독립된 외부 출신 감찰관을 통한 투명한 내부감찰업무 수행 등이 기대된다는 점, 현재 감사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달리 자체감사 결과를 다른 기관 등에 보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회·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경우 감사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15)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반대입장**은 현재도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특별반을 편성하여¹⁶⁾ 사무처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찰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감사원 운영과 관련한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해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경우 외부에서 감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찰관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력·예산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총장의 인사사무감사 실시를 명시한 「감사원법」 제18조제4항¹⁷⁾과의 상충을 보완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내부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점검받고 있어 별도 보고의무 신설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16)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7) 제18조(직원의 임용)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5. 감사의 기본원칙 규정

- 개정안은 감사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유지, 인권 존중, 적법 절차 준수, 권한남용 금지, 감사대상 기관의 부담 최소화, 비밀누설 금지 등 감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2.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3.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4.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6.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7.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대상자 또는 감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감사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¹⁸⁾에서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독립성 준수, 감사내용공표 및 비밀누설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추가하고 있음.¹⁹⁾

○ 참고로, 비밀누설 금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무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임.²⁰⁾

□ 감사의 기본원칙 명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찬성입장은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18)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19)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제3호와 달리 감사 수행 시 준수규범에서 조리를 삭제함.

2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100조²¹⁾에 따르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피감사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반대입장**은 감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감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감사환경 변화의 적시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21)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절차 규정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 개정안은 디지털 자료를 추출할 때 기간을 정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선별 추출할 경우에는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감사원은 현장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의 대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어 반드시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별 추출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복제본 생성 및 디지털 자료 탐색, 추</u>

현행	개정안
<신설>	<u>출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u> ⑦ (생략)

□ 개정안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료 제출이 증가하고 있는 감사현실을 고려하여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의 자료 추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활동 중 적정한 디지털 자료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²²⁾에서는 감사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에서 디지털포렌식에 의해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 추출하는

22) 제7조(자료의 제출)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선별 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을 제출받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제본을 생성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제5조²³⁾).

-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 등에게 디지털 자료의 탐색·추출, 복제본 생성·획득 등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제6조²⁴⁾).

○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06조²⁵⁾에서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 23) 제5조(수집) ①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에서 선별 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을 제출받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제본을 생성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③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해시값 생성 및 확인과 디지털포렌식 대상이 되는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사용자는 물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도 포함한다. 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4) 제6조(참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 등에게 디지털 자료의 탐색·추출, 복제본 생성·획득 등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25)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디지털 자료의 취득 방법·절차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²⁶⁾

○ 찬성입장은 감사원의 감사활동 및 그에 수반된 자료의 취득은 당사자의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 및 참여 없는 디지털 자료 추출 및 복원 등을 법률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반대입장은 디지털 자료 추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은폐·조작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현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디지털 자료 추출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감사자료 은폐·조작방법 등의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고, 관련 내용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행정기관(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입법례에도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키워드 검색을 디지털 자료 선별 추출방법 기본원칙으로 할 경우 해당 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될 수 있고, 키워드 재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피감사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6) 안 제27조제6항은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항을 셋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전단·후단·단서의 관계 등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2개의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7.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의 열람·복사권 보장

- 개정안은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게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열람·복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 ⑤ (생략) <신설> <u><신설></u>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의 열람·복사권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의 감사과정에서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후 절차(징계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의 무기대응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피의자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함(「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²⁷⁾).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 문답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면 증거인멸, 관계자 허위진술 유도 등을 통해 감사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허용 시에도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7)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8. 변호사의 참여권 등 보장

- 개정안은 감사과정 및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과정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은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조사절차,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알려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제기 등)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및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관계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은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조사절차,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개정안은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대상자 등의 절차적 권리를 법률에서 직접 보장하여 적정한 감사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²⁸⁾에서는 관계자 등에 대한 문답서 작성 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호사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등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
- 28) 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음.

- 참고로, 「국세기본법」, 「관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²⁹⁾

□ 변호사의 참여권 및 이의제기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찬성입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대상자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 수준의 강한 절차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반대입장은 유사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경우 변호사의 참여권 및 당사자 등의 이의제기권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29)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변호인 참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및 공공감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 신중할 필요가 있고, 변호인의 이의제기 및 처리결과 통보의 경우 다른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에 비교해 과도한 조치로서, 오히려 감사방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에서 배제

- 개정안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 ----- ----- ----- ----- --. <u>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이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0조제1항).

- 개정안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감사원의 협조 요구가 그 정도를 넘어 일반 사인(私人)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행위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행정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가 대부분

일반 사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의 권한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됨을 금지하여 마치 감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고, 현재도 감사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10. 벌칙

- 개정안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감사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와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51조(벌칙) ① ----- ----- ----- -----.
② <u>제27조제4항을</u>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수행한 자</u>
③ (생략)	② <u>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u> 를----- -----.
	③ (현행과 같음)

- 우선,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감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범죄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은 감사를 위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의 내용’ 또는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제27조제4항 및 제5항³⁰⁾)을 모두 두면서도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목적 외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제51조제2항)을 두고 있을 뿐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목적 외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30)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출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³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절차 등³²⁾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형벌 부과를 통하여 취득 절차 등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디지털 자료를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2) 안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⑥ 감사원은 현장에서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의 대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어 반드시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별 추출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복제본 생성 및 디지털 자료 탐색, 추출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감사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된 절차와 방법’의 의미가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지 그 한계가 모호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이 곤란하고, 개인 신상·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감사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형량도 개정안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칙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없으며, 디지털 자료 추출과정에서 절차와 방법 위반만을 사유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고, 다른 수사·조사기관과 달리 감사원 직원에게만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며, 감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
